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11-7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훈 령

- 제1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근무실적 상시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9

고 시

- 제2011-57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신설 15

공 고

- 제2011-67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6
- 제2011-695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 공고 17

인사발령

- 2011. 8. 1 ~ 8. 3 일자 1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 (내사랑영등포→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4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7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의 용자대상, 선정기준, 우선순위 등을 개정하고 대출기한 및 실효기간을 조정하여 신속한 기금의 집행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기금의 용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도록 용자대상을 확대함 (안 제2조의2)
- 나. 기금의 용자대상 선정기준에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 다.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와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우위를 주도록 용자대상 우선순위를 개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 신설 (안 제3조의 2)
- 라. 용자신청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용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출서류를 개정 (안 제4조)
- 마. 대출기한 및 실효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기금의 대출 실행을 이루고자 함 (안 제5조의 2)
-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50-9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전화번호 : 2670-3424, fax 2670-3628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한다)

제3조제1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조업
- 나.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다.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마. 산업디자인 업종(「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소기업자
- 3.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 사차향락유형 및 퇴폐 업종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업체수가”를 “대상업체의 용자신청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3.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자신청자 중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제3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내의 우선순위와 동향”을 “동종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제1항”으로, “의한”을 각각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할지역내에서”를 “관할지역 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망중소기업 지정사실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확인서”를 “결산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6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월의 범위내”를 “1개월의 범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

신청인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년월일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	
		공장				팩스	
대표자 주소					연락처		
업종			생산품목			종업원수	명
연매출액 (연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총액	백만원
자격요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담보제공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서		
총 신청금액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규정하는 것-----.</p>
<p>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p>	<p>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 ----- -----.</p>
<p>② (생략)</p> <p>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회계처리하여야----- -----.</p>
<p>제2조의2(기금의 용도)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조의2(기금의 용도) ① ----- 따라 ----- 각 호 -----.</p>
<p>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p> <p>2.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단 기금에 출연</p>	<p>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p> <p>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p>
<p>3.4. (생략)</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p>	<p>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 ----- -----.</p>
<p>1. 영등포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영등포구 관할지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와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한다)</p>	<p>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한다)</p>
<p><신 설></p>	<p>가. 제조업</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의 2. (생략)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신 설>

3. 준공업지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다만,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중점관리대상 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생략)

5.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설치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6. 삭제

7.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의2(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용자신청 대상 업체수가 용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용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준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업종

2. 준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업종

나.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다.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마. 산업디자인 업종(「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1의 2. (현행과 같음)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소기업자

2의 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 사차·항락·유홍 및 퇴폐 업종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현행과 같음)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 해당 -----

6. 삭제

7. 그 밖에 -----

제3조의2(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 대상 업체의 용자신청액이 -----.

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3. 비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업종

② 제1항의 경우 동일 업종에 대한 순위는 동일 지정업체, 수출업체, 창업투자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및 저소득층 부업업체 순으로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내의 우선순위와 동항에 규정한 이외 업체의 용자 우선순위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용자신청 및 확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등포구 관할지역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2호, 제4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 1. ~ 5. (생략)
- 6. 기타(창업투자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체의 입증자료, 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실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② (생략)

제5조(용자대상 선정통보)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의2(대출기한 및 실효) 용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구청장이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6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용자지원 선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자신청자 중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다.

③ 동종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제1항-----

----- 따라 -----
-----..

제4조(용자신청 및 확인) ① ----- 따라

----- 각 호 -----
----- 관할지역 내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 결산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증명원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용자대상 선정통보) ① -----
----- 따라 -----

-----.

② -----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대출기한 및 실효) -----
----- 2개
----- 월 이내 -----

----- 1개월의 범위 -----
-----.

훈 령

서울특별시영등포구훈령 제1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근무실적 상시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근무실적 상시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근무실적 상시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 부서장 이상의 추천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근무실적 상시평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평가한다.
1. 부서장 이상 추천
2. 감사담당관의 적격여부심사
3. 근무실적 상시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② 평가기준은 대상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평가기간) 매 6개월 단위로 평가하되, 수시 및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활용)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실적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포인트 운영, 부서·팀 공무원 평가 시 선별적 적용
2. 해당부서 평가사항을 부서장 목표관리제 평가 시 반영
3. 승진 및 보직부여, 부서전보 등 조직관리 전반에 걸쳐 인사 참고자료 활용
4.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구청장은 실질적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근무실적 상시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단, 5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구청 주요업무추진 우수 직원, 부서, 팀
 2. 세원 발굴 및 예산절감 우수 직원, 부서, 팀
 3. 업무제도개선 및 고충민원 처리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타 직원에 귀감이 된 자
 5. 징계처분, 직위해제, 불문경고, 주의, 훈계 처분을 받은 자
 6. 무계결근, 무단이석, 지참 및 무단조퇴 등 근태 불량한 자
 7. 대민불친절, 민원을 야기한 자
 8. 직무수행 불성실에 해당한 자
 9.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국장, 보건소장 등 4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부서 및 우수 팀,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열심히 일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 및 포상금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성실·불성실한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또는 조직관리에 장애가 되고 비협조적이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협조요청)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실적 상시평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 2)

추천서

- 부서명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추천사유

【추천 항목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추천항목

추천사유

※ 관련 증빙자료 첨부

2011. .

추천자 : (인)

(별첨 # 3)

근무실적 상시평가 결과 통보서

□ 평가부서 :

□ 평가기간 : 2011. 7. 1 ~ 2011. 12. 31

순위	소속	직급	성명	생년 월일	가점(加點)		감점(減點)		비고
					점수	항목	점수	항목	

(별첨 # 4)

근무실적 상시 평가 관리 현황

(부서 : 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가 점(加點)			감 점(減點)			비고
					계	배점	항 목	계	배점	항 목	
계											
1	행정국	행정7급	홍길동	2011.07.25	5	5	세원 발굴	△0.5	△0.5	무단이석(1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1-57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규정에의하여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지적도근점 지역좌표계 측량성과

번호	기준점명칭	평면직각중형선수치	기준원점명	설치일 (관측일)	소재지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1	8413	X	449524.07	중부원점	2011. 7.9.	양화동 153-12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89618.21					
2	8414	X	449554.40	중부원점	2011. 7.9.	양화동 153-17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89530.59					
3	8415	X	449684.79	중부원점	2011. 7.9.	양화동 153-14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89560.78					
4	8416	X	449666.39	중부원점	2011. 7.9.	양화동 153-14앞	철재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Y	189564.76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2011-679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인을 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직인사용개시일(폐기일) : 2011. 7. 18

나. 등록사유 :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재무회계 직인 등록폐기

다. 등록직인인영

직인명	영등포구홍보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	영등포구홍보관광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직인명	영등포구기획예산과 일상경비출납원	영등포구기획예산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직인명	영등포구부동산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	영등포구부동산정보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라. 폐기직인인영

직인명	영등포구기획홍보과 일상경비출납원	영등포구기획홍보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직인명	영등포구지적과 일상경비출납원	영등포구지적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직인명	영등포구도시디자인과 일상경비출납원	영등포구도시디자인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695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림중앙시장을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8. 4 ~ 8. 19(15일간)
- 시 장 명 : 대림중앙시장
- 공고내용 : 전통(인정)시장 인정사항

등록번호	시장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규모		인정일자
				시장면적	점포수	
2011-1	대림중앙시장	조창묵	영등포구 대림동 1075-47호 일대	5,405㎡	102개	2011.8.1

인사발령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116호>

일련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김 재 욱 (69.06.16)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부동산정보과		지방행정 서 기
2	박 부 경 (78.12.24)	복직을 명함 양평제1동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행정 서 기

(발령연월일 : 2011년 08월 01일자)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발령

<발령번호 : 제117호>

일련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오 봉 환 (53.12.2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복지국	국 장	지방서기관

(발령연월일 : 2011년 08월 03일자)

일반직공무원 전출입발령

<발령번호 : 제120호>

일련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엄 중 속 (81.06.27)	경상남도 밀양시 전출을 명함			신길제3동		지방사회 복지서기
2	이 수 영 (76.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사회복지서기로 강임함 신길제3동 근무를 명함			충청북도 음성군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1년 08월 01일자)